



미국 의료보험의 최저손해율 규제

임준 연구위원

미국은 의료산업의 효율성 증진과 소비자후생 제고를 위해 2011년에 최저손해율 규제를 도입하였음. 최저손해율 규제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실제손해율이 최저손해율을 하회하면, 그 차이를 환급금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함. 규제 도입이 보험료, 지급보험금, 시장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규제 준수를 위한 보험회사들의 대응 방식은 보험료 인하보다는 지급보험금을 증가시키는 것이었음. 국내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손해율 규제가 사업비 규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최저손해율 규제는 우리나라 사업비 규제 이슈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의료분야 개혁을 위해 2010년 ‘오바마 케어’로 알려져 있는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하 ‘ACA’)을 제정하였음

- ACA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확대, 공적제도의 보장성 강화,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 취약계층의 보호강화, 질병예방 및 공중보건 강화 등임¹⁾

-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는데, 특히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저손해율(Minimum Medical Loss Ratio) 규제를 2011년에 도입하였음

- 손해율은 지급보험금(claims costs)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출(quality improvement expenditures)의²⁾ 합을 보험료(premium)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1) 김계현·김한나·이정찬(2015), 「미국 「환자보호 및 적정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0권, 제1호, pp. 69~95

2)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출이란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사용된 비용들을 의미함. “They must be designed primarily to: 1) improve health outcomes and reduce disparities; 2) prevent hospital readmissions; 3) improve safety, reduce medical errors, and lower infection and mortality rates; 4) implement, promote, and increase wellness and health; and 5) enhance the use of data to improve quality, transparency, and outcomes and support meaningful use of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Harrington 2013)

- 개인과 소그룹(small group)³⁾ 의료보험시장의 경우에는 손해율이 80% 이상, 대그룹(large group) 시장의 경우에는 85% 이상이어야 함
 - 만약 실제 손해율이 최저 손해율을 하회하게 되면, 실제 손해율과 최저 손해율의 차이만큼을 보험 가입자에게 환급금(rebates)의 형태로 되돌려주어야 함
- 규제도입에 대해 찬반 논쟁이 치열했는데, 찬성론자는 보험회사의 사업비(administrative costs) 절감과 보험료 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음⁴⁾
- 또한, 일부 독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최저손해율 규제를 통해 사업비뿐만 아니라 독점 이윤도 규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음
 - 의료보험사업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의 손해율이 매우 낮아서,⁵⁾ 규제가 요구하는 손해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윤도 축소해야 함
- 반면, 반대론자는 규제를 준수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⁶⁾
- 또한, 찬성론자의 예상처럼 사업비 절감과 보험료 인하를 통해 대응하기보다는 지급보험금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규제 효과에 대한 양측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분석한 연구들이 아직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발표되었음⁷⁾
- 초기 연구들은 주로 규제 도입 이전인 2010년과 규제 도입 이후인 2011년 자료의 비교를 통해 시장영향을 분석하였음
 -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개인, 소그룹, 대그룹 등 3가지 유형의 시장 가운데 규제 도입 이후 가장 크게 변화한 시장은 개인시장임
 - 왜냐하면 규제 도입 이전의 실제손해율이 최저손해율 기준에 미달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3) 근로자 수가 100인 이하인 경우가 해당됨

4) 보험료=[사업비(administrative costs)+이윤(profits)]+[지급보험금+의료서비스 질 개선 비용]이라고 할 때, 지급보험금과 의료 서비스 질 개선 비용 항목의 수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비와 이윤, 그리고 보험료 항목의 수치를 낮추면, 손해율(=[지급보험금+의료서비스 질 개선 비용]/보험료)이 증가하게 됨

5) Karaca-Mandic et al.(2015)

6) Harrington(2013)

7) Abraham et al.(2014); Clemans-Cope et al.(2015); McCue et al.(2013); McCue and Hall(2015) 등의 연구가 있음

개인시장이기 때문임

- 한편, 보험회사의 반응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의 조정보다는 지급보험금을 증가시킴으로써 손해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초기의 연구들이 너무 짧은 기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었음

- 최근 Cicala et al.(2017)은 연구 대상기간을 규제 도입 이전은 2005년까지, 그리고 규제 도입 이후는 2013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 영향을 분석하였음
 - 연구 결과, 초기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현재까지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은 보험회사들이 최저손해율 규제에 대해 보험료 인하보다는 지급보험금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점임

-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실질적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다소 시기가 빠르지 않나 여겨짐

■ 국내 시사점과 관련해서는 손해율 규제가 사업비 규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최저손해율 규제는 우리나라 사업비 규제 이슈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kiri**

참고문헌

- Abraham, Jean M., Pinar Karaca-Mandic, and Kosali Simon(2014), “How Has the Affordable Care Act’s Medical Loss Ratio Regulation Affected Insurer Behavior?”, *Medical Care* 52(4): pp. 370~377
- Cicala, Steve, Ethan M.J. Lieber, and Victoria Marone(2017), “Cost of Service Regulation in the U.S. Health Care: Minimum Medical Loss Ratios”, *NBER Working Paper* 23353
- Clemans-Cope, Lisa, Bowen Garrett, and Doug Simon(2015), “Health Insurer Responses to Medical Loss Regulation: Increased Efficiency and Value to Consumers”, *Technical Report*, Urban Institute
- Harrington, Scott E.(2013), “Medical Loss Ratio Regulation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Inquiry 50: pp. 9~26

Karaca-Mandic, Pinar, Jean M. Abraham and Kosali Simon(2015), “Is the Medical Loss Ratio a Good Target Measure for Regulation in the Individual Market for Health Insurance?”, *Health Economics* 24: pp. 55~74

McCue, Michael, Mark Hall, and Xinliang Liu(2013), “Impact of Medical Loss Regulation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Health Insurers”, *Health Affairs* 32(9): pp. 1546~1551.

McCue, Michael and Mark Hall(2015), “Health Insurers’ Financial Performance and Quality Improvement Expenditures in the Affordable Care Act's Second Year”,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72(1): pp. 113~122.